등록금 분할납부 운영(안) 및 신청안내

1. 분할납부 신청방법

- 가. 분할 회수 : 2회, 3회, 4회 중 택 1
 - * 교육비 납입 증명서는 납입금 완납 된 이후 발급 가능 (4회로 분납 신청한 경우, 4회 차까지 납부가 완료 되어야 발급 가능)
- 나. 분할납부 신청 불가항목: 기타납입금(의료상조회비)
- 다. 분할납부 신청기간

구분	신청기간	비고
신청	2019년 1월 2일(수) 10:00 ~	
	2019년 1월 11일(금) 17:59	

라. 분할납부 등록기간

구분	등록기간	비고
1회 차	2019.01.07.(월)~01.11.(금)	시작일 09:00 ~ 마감일 17:59 납부가능
2회 차	2019.02.11.(월)~02.15.(금)	
3회 차	2019.03.11.(월)~03.15.(금)	
4회 차	2019.04.22.(월)~04.26.(금)	ロ ト フ 0

마. 신청 및 변경 절차

카이스트 포탈에서 신청기간 내 직접 분할납부 신청

- 카이스트 포탈(http://portal.kaist.ac.kr) -> 학사시스템 -> 등록/장학 -> (새창) -> 등록 -> 분납신청 -> "납입금 분납신청/취소"(개인납부/기관납부 모두 가능)
- 바. 분할 등록금 고지서 출력

분할등록기간 중 카이스트 포탈(http://portal.kaist.ac.kr) -> 학사시스템 -> 등록/장학-> (새창) -> 등록 -> 분납신청 -> "분납고지서 출력"

2. 분할납부 처리방법

- 가. 1회 차 분할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등록을 필한 것으로 간주
- 나. 분할납부 대상자가 1회 차 분할등록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 자격이 취소되며, 추가 등록 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
- 다. 1회 차를 납부하고 2회 차 또는 3회 차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 회 차 납부기간에 미납 금액을 포함하여 납부 (이 경우 '자'에 해당하지 않음)
- 라. 총 2회 미납 시 관련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하며, 기 납부한 분할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
- 마. 1회 차 이상 분할납부한 등록자가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
 - 1) 기 납부한 분할 등록금이 반환 대상 등록금보다 많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
 - 2) 기 납부한 분할 등록금이 반환 대상 등록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납부하여야 함
- 바. 1회 차 이상 분할납부한 등록자가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반환 대상 등록금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많은 경우 차액을 납부하여야함
- 사. 분할납부 최종등록 기한까지 분할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련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하며, 기 납부한 분할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
- 아. 연차초과자는 분할납부 2회까지 신청 가능
- 자. 분할납부 신청 후 미납할 경우. 차기 1학기 동안 분할납부 신청 제한

문의처 : 학적팀 registrar@kaist.ac.kr / 042-350-2366

2018. 12. 17.

KAIST 교 무 처 장